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410

발의연월일: 2024. 9. 27.

발 의 자:맹성규·한민수·윤종군

황명선 • 이기헌 • 황운하

복기왕 · 손명수 · 이연희

문진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암표매매 행위를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등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 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행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암표매매 역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오프라인의 경우에도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소 이외에도 다양한 공간에서 암표가 매매되고 있는바, 구체적인 장소를 처벌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암표매매의 구성요건에서 장소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상습 또는 영업으로 암표매매를 하는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여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암표매매 행위를 처벌하되, 일회성·소규모로 이루어

지는 거래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4호).

법률 제 호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범죄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을 "요금이 정하여진 입장권·관람권·승차권·승선권 또는 그에 준하는 증서를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취득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생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현행과		
략)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②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			
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			
으로 처벌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암표매매) <u>흥행장, 경기장,</u>	4 <u>요금이 정하여</u>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진 입장권・관람권・승차권・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	<u>승선권 또는 그에 준하는 증</u>		
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서를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	신이 취득한 가격을 넘은 금		
<u> 승차권 또는 승선권을</u> 다른	<u> 액으로</u>		
사람에게 되판 사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